

제 호

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단체 또는 법인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:

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